

<참고자료>

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

##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### 1. 제정이유

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을 농촌지도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활동함(안 제2조)
- 나. 연구모임의 명칭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품목별 시군단위 연구회, 품목별 연합회, 품목별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함(안 제4조)
- 다. 연구모임 활동은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 배양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(안 제3조)
- 라. 연구모임의 체계적인 조직, 운영 등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두며,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함(안 제6조, 제11조)

### 3. 관계법령 : 농촌진흥법 제2조

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

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2005. 7. 18

농촌진흥청장

##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농촌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”(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)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) ① 시군단위 연구모임은 “00시구(군) 00연구회”라 한다.

②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“00도 00연구회”라 한다.

③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“ 00도00연구회”라 한다.

④ 중앙단위 연합모임은 “한국00연구중앙연합회“ 라 한다.

제4조(연구모임의 조직) ① 연구모임은 시군단위조직, 광역단위조직, 도단위 연합회,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1. 시군단위 조직은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(가능)작목 등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2. 광역단위 조직은 1개 시군에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가수가 적을 경우 다수 시군 또는 도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.

3. 도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4. 중앙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도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② 단위연구모임의 회원수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연구모임은 자체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

1. 회칙에는 연구모임의 명칭, 목적, 사업, 회원, 임원, 회의,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5조(활동) 연구모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.

①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의 정례모임을 개최한다.

② 연구모임의 효율적인 육성에 필요한 리더쉽 및 기타 필요한 교육, 선진지 견학 등을 회원, 지도자 및 지도공무원(전문지도사,관리자)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.

③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(생산, 유통, 가공, 판매 등)에 관한 연구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.

- ④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.
- ⑤ 소비자단체,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.
- ⑥ 연구모임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모임육성위원회)**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공무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에서 연구모임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의 등록, 부서별 사업지원, 활동방향 심의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운영지원)** ①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효율적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.

- ② 연구모임별 전담지도사(연구사) 1인 이상을 지정한다.
- ③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의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을 연구모임 회원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다
- ④ 연구모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평가)** ① 매년 연구모임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 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우선 지원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